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1204 집행판결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1. [redacted]시

소송대리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2. B

소송대리인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11. 8.

판 결 선 고 2020. 1. 17.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및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redacted]시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0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redacted]등기소 등기관 등은 원고와 C 사이의 [redacted]법원 2013자3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의 2014. 1. 27.자 화해조서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한 [redacted]법원 2018. 6. 20.자 집행문에 기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redacted]등기소 2015. 9. 4. 접수 제153332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9. 4. 접수 제153333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6. 7. 접수 제67140호로 마친 각 가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B는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redacted]등기소 2007. 10. 10. 접수 제435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2. 피고 [redacted]시는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redacted]등기소 2015. 9. 4. 접수 제153332, 153333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7. 2. 16.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redacted]법원 2007카단1843호로 처분금지가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0

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21. 위 가처분기입등기를 마치면서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1) C은 원고를 상대로 [redacted]법원 2007가단2003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같은 건물 D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8. 14. 전부인용판결(무변론)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9. 1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2) C은 2007. 10. 10.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04.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redacted]법원 2013자36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같은 건물 E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2014. 1. 2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하였다.

화 해 조 항
1. C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하여 [redacted]법원 안양지원 [redacted]등기소 2007. 10. 10. 접수 제435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0. 5. 접수 제426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건물 E호에 대한 같은 등기소 2007. 10. 18. 접수 제447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같은 건물 E호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라. C은 2015. 6. 15.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같은 달 16. 위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1) 피고 [redacted]시는 2015. 9. 4.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redacted]등기소 접수 제153332호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0

제153333호로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또한 피고 B는 F를 상대로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2018카단100869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8. 6. 7. 인용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redacted]등기소 접수 제67140호로 가압류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1) 원고는 2018. 6. 20. 피고들을 C의 승계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초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2018. 8. 27.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redacted]등기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으나, 위 등기소 등기관 G은 2018. 9. 5. 위 각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2) 이에 원고는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2018비단2호로 전항 기재 등기관의 각 각하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0. 18. 이 사건 각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00조에 따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1) F는 피고 B를 상대로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2018카단10104호로 위 마.의 2)항 기재 가압류에 대하여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위 집행법원은 2019. 2. 27. 위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다.

2) 원고는 2018. 10. 8. 피고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16. 불수리통지를 받았다.

아. F는 2019. 1. 21. H [redacted]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매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0

하고 같은 달 23. 위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이 확인되었고 C은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며, 피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으므로 피고들도 원고에 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redacted]법원[redacted]지원 [redacted]등기소 등기관 등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피고 [redacted]시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C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마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redacted]시는 위 각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도 무효인 C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B는 이해관계자로서 C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살펴본다(피고 [redacted]시의 본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0

전항변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직권판단).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법상 공동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에 관하여 등기의무자의 의사를 갈음하는 것으로, 말소등기청구의 경우 말소를 구하는 해당 등기의 명의인이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집행법원이나 행정기관의 말소촉탁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기관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redacted]법원 안양지원 [redacted]등기소 등기관의 이 사건 각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청구는 심판의 대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청구취지가 불명확하여 재판으로서 구할 수 없는 것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말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나, 승계집행문은 판결 등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 등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으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385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화해조서의 피신청인 C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에게 부여된 피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부적법하므로, 결국 위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0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은 2015. 6. 16. F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피고 B는 F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결정([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2018카단100869)을 받아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B는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F에 대하여 승낙의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이행청구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 B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피고 [redacted]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체납하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서 행해지는 압류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써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0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여전히 유효하고,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C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다(이 사건 화해의 신청원인도 원고와 C 사이의 합의일 뿐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C이 이 사건 화해 성립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F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F는 H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현재 H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적법한 소유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및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피고 [redacted]시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0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redacted]시 I, J에 있는 K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8층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및 기계실

1 내지 7층 각 761.43㎡

8층 618.76㎡

지하 1 내지 3층 각 778.95㎡

지하 4층 718.3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L호 철근콘크리트조 28.809㎡

2. (1동의 건물의 표시)

[redacted]시 I, J에 있는 K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8층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및 기계실

1 내지 7층 각 761.43㎡

8층 618.76㎡

지하 1 내지 3층 각 778.95㎡

지하 4층 718.3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M호 철근콘크리트조 28.809㎡. 끝.